

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명칭은 서울신학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 (위치) 본 센터는 본대학 내에 둔다.

제4조 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.

- ①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
- ② 장애학생의 생활·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
- ③ 장애학생의 시설·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
- ④ 장애학생의 상담·진로에 관한 사항
- ⑤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

제2장 조 직

제5조 (센터장) 본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.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 (특별지원위원회 구성) 본 센터의 운영을 자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해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재가에 의한다.